

일반선박(또는 기타선박)의 정기검사시 두께계측 최소범위 요건 개정

■ 주요 개정 사항 요약

관련 규칙	시행 일정
선급 및 강선규칙 1편 2장 4절 표 1.2.4의 1 & 2	2020년 1월 1일(검사신청일 기준) 시행사항

■ 주요 개정 사항

○ 개정 사유

IACS UR Z7(Rev.27)을 반영

○ 개정 사항

제 3차 정기검사 및 이후의 정기검사 시 계측해야 하는 두께계측 요건 중 선수 및 선미피크탱크의 내부재에서 선수 및 선미피크 평형수탱크 내부재로 개정함

○ 영향 분석

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
: 해당 사항 없음

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
: 해당 사항 없음